

## 서비스이용약관 신규대조표

변경전	변경후
<p>제4조 [ CMS이용거래의 범위]                      ⑥전자동의서비스 :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을 통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납부자가 이용자에게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서비스</p> <p>제 11조 [ 이용자의 의무 ]                      ⑭전자동의서비스 이용자는 납부자의 동의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하여야 한다.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</p>	<p>제4조 [ CMS이용거래의 범위]                      ⑥ 전자동의서비스 :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을 통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납부자가 이용자에게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서비스(ARS녹취대행, 모바일간편동의 등)</p> <p>제 11조 [ 이용자의 의무 ]                      ⑭ 전자동의서비스 이용자는 납부자 동의요청 시 사전에 납부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며, 본인확인 소홀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</p>
<p>제11조(이용자의 의무)                      ⑦이용자는 이용자정보(업체명,대표자명,사업자번호,주소,전화번호,FAX번호,E-Mail주소,핸드폰번호 등)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회사로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 다만 이용자정보의 정보 변경은 회사가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</p>	<p>제11조(이용자의 의무)                      ⑦이용자는 이용자정보(업체명,대표자명,사업자번호,주소,전화번호,FAX번호,E-Mail주소,핸드폰번호 등) 및 계좌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회사로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 다만 이용자정보 및 계좌정보 변경은 회사가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</p> <p>제20조(자동이체자금의 정산)                      ②항 4호 회사는 이용자가 수납자금을 수령하지 못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.</p> <p>제20조(자동이체자금의 정산)                      ④항 3호 이용자가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 수납자금을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</p>